



“구제역,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대한한돈협회

우편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Fax581-9769 환경방역팀

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2-20호

시행일자 2024. 12. 03.

수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시간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양돈장 질식사고 예방물품(법적 의무) 수요 조사 협조 요청

1. 지난 12월 2일 전북 완주소재 양돈농장에서 분뇨저장조 청소작업중 황화수소 질식 재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2. 질식재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강한 처벌등이 이뤄짐으로 회원농가의 적극적인 질식재해 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양돈장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농가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예방 물품 제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추진코자 하오니 지부(회)에서는 수요물품을 농가별로 조사하시어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 기준 및 의무

1)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① 의무사항을 미 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의무 사항

- ① 질식 재해 위험 공간 안내 표지 부착
- ② 질식 재해 위험 관련 근로자 교육 의무
- ③ 질식 재해 위험 공간 진입시 재해예방 장비 확보계획 수립
- 산소 및 황화수소 측정장비, 송기마스크 등

□ 수요조사 방법 및 기한 :

- 지부별 조사를 통해 도협의회에서 취합(12/13일 까지)
- 관계법령 및 제작물품 문의 중앙회 담당자(김하제 과장) 문의

□ 제작 물품

<p>안내스티커</p>	<p>교육자료(내국인)</p>	<p>교육자료(외국인)</p>

붙임 : 양돈장 저장조 질식사고 법적 예방 물품 양식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